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제17조 관련)

1.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급분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도점검	연1회	연1회	<u>연1회</u>	연2회
나. 인증기관 합병 시 행정처분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라목에 따른 감면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라목에 따른 감면	—	—
다.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제	—	—	—
라. 친환경인증 관리정보시스템 공표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공표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공표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공표	—
마. 동일 인증 기관 연속 2회 초과 인증 금지	규칙 제47조의6에 따른 면제	규칙 제47조의6에 따른 면제	규칙 제47조의6에 따른 면제	—

2.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방법

- 1) 등급결정 결과 활용기간은 2년(2025년부터 활용)으로 한다. 이때, 인증기관별 적용 등급은 등급결정 결과를 활용하는 시작연도의 직전 2년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제19조 제4항에 따른 등급을 적용한다.
- 2) 법·영·규칙에 인증기관 등급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활용한다.